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변경 안내

■ 법령 관계규정

1. 교육경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당해 사용자가 교육경비를 부담토
록 규정 (건기법 제6조)

2. 교육대상

교육대상을 다음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 (영 제7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

3. 교육기한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로부
터 3년내 교육이수(영 제7조 제2항)

- ※ 질병·입대·해외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교
육훈련 연기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교육을 연기받고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교육이수토록 함.

4. 교육기관

다음 각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 제1항)

- 정부투자기관
-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건설기술관련 학회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
- 건설업자 등 교육의무 대상 기관 또는 사업자

5. 교육훈련기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 실시 가능 (규칙 제3조 제2항)
- 교육훈련 미이수자와 경비 미부담 사용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영 제63조 제3항, 별표 7)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 훈련 기간	
		건설기술자	감리원
1) 기본교육	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나.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2주이상. 다만, 기술사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1주이상	2주이상. 다만, 건축사, 기술사 또는 외국인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주이상
2) 전문교육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1주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	1주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제도개선 방향

- 수요자 위주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
- 기술자의 현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실시
-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향상
-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기관간 공정경쟁 활성화
- 교육과목 등은 업계 및 기술자 수요에 맞게 조정

※ 우리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제 전문 14호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최초교육 3주 중 전문교육 1주간 담당할 수 있음)이며 1999년 교육일정 및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